



민간위탁 조례의 전국 비교

광역 15개소의 조문 구성과 재계약의 규율

작성	위탁관리 본부장
검수	연구소장
www.kiem.re.kr	

요약

보고서의 대상

광역 15개소의 일반 조례

앞선 보고서에서 확인하였듯 위탁 실무의 물음은 **상당 부분 조례로 돌아감**(KIEM-REPO-2026-03). 그렇다면 그 조례들은 서로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른가. 이 보고서는 광역자치단체 **15개소의 일반 민간위탁 조례**를 모아 조문 구성을 대조한 것임.

먼저 **이름부터 같림**. 15개소의 조례명이 **여덟 가지**임 —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7개소으로 가장 많고, 「민간위탁 기본 조례」·「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사무위탁 조례」처럼 표제가 다른 자치단체도 있음.

시행 시기가 최근에 몰려 있음. 15개소 가운데 **9개소(60%)이 2025년 이후** 시행분이고, 2026년에 시행된 것만 4개소임. 조례 개정이 최근 2년 사이에 집중되었음.

구성에는 **공통의 기본형**이 있음. 목적·정의·대상 사무의 기준·의회 동의·수탁기관 선정과 심사위원회·지도감독·성과평가는 **15개소 모두가** 두고 있음. 반면 **정산**은 경기도만, **정보공개**는 부산광역시만 독립 조문으로 두었음.

가장 크게 갈리는 것은 **재계약의 규율**임. 재계약 조문 자체가 없는 자치단체가 3개소이고, 위탁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정한 자치단체와 **5년**으로 정한 자치단체가 나뉘며, 재계약 횟수를 **1회로 제한**한 자치단체는 확인된 범위에서 3개소임.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자치법규를 조회한 것임. 조례 본문 전체를 조문별로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이 보고서의 「확인되지 아니함」은 규정이 없음을 의미하지 아니함**. 그 범위를 02절과 근거와 한계에 밝혀 두었음.

대상 광역	조례명 유형	2025년 이후 시행	정산 조문
15개소	8종	9개소	1개소

보고서 핵심

광역 민간위탁 조례는 **「같은 틀, 다른 속」**의 모습을 보임. 위탁의 개시에 관한 절차 — 대상 사무의 기준, 의회 동의, 공개모집과 심사위원회 — 는 **15개소가 모두** 두고 있어 구조가 거의 같으나, 위탁이 시작된 뒤의 국면 — **정산, 회계감사, 재위탁, 정보공개** — 로 갈수록 조문의 유무가 갈림. 정산을 독립 조문으로 둔 자치단체는 1개소, 회계감사는 3개소, 재위탁 금지를 독립 조문으로 둔 자치단체는 3개소임. 현장 질의의 절반이 **집행과 정산**에 몰려 있다는 사실(KIEM-REPO-2026-03)과 겹쳐 보면, 질의가 집중되는 영역과 조례의 규율 밀도가 낮은 영역이 **서로 겹친다**는 것이 이 대조의 결론임.

I. 대상과 방법

01 수집의 범위

광역 본청의 일반 조례

국가법령정보 자치법규

대상은 **광역자치단체 본청이 둔 일반 민간위탁 조례**임. 개별 사무에 관한 조례(사회복지시설 위탁, 시설 관리위탁 등)와 교육감 소관 조례, 기초자치단체 조례는 제외하였음. 하나의 자치단체에 하나의 조례가 대응하도록 하여 비교의 단위를 맞추기 위함임.

수집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자치법규 검색**으로 하였음. 조례명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여 「민간위탁」, 「사무위탁」, 「기본」 등의 낱말을 바꾸어 가며 자치단체별로 찾았음.

그 결과 **15개소**의 조례를 확인하였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본청의 민간위탁 조례가 검색되지 아니하여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2026년 7월 1일 통합으로 출범한 직후이며, 소속 자치구 5개소는 통합 시점에 맞추어 각각 조례를 제정한 것이 확인됨.

개별 사무의 조례를 제외한 이유가 있음. 그러한 조례는 **해당 사무의 사정**을 담고 있어 비교의 단위가 되지 못함. 일반 조례는 **모든 위탁 사무에 공통으로 적용될 것을 예정**하므로 자치단체가 위탁을 어떻게 규율하려 하는지가 드러남.

목록은 **시행일 순**으로 나누어 두 표에 실었음.

표 1. 대상 조례 ① — 2024년 이전 시행

구분	조례명	시행일	조문 수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2021. 9. 30.	37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2022. 1. 13.	23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023. 1. 1.	25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2023. 4. 17.	32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2024. 5. 9.	22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2024. 5. 10.	25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치법규를 본 연구소가 조회하여 정리. 조문 수는 각 조례가 밝힌 값

6개소 가운데 **경상북도**만 제명에 「민간」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경상남도**는 「촉진 및 관리」를 덧붙였음. 조문 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32개로 가장 많고 경상남도가 22개로 가장 적음.

I. 대상과 방법 (계속)

02 최근에 시행된 조례

2025년 이후

9개소

나머지 9개소는 2025년 이후에 시행되었음. 대상 15개소의 **60%**가 여기에 해당함.

표 2. 대상 조례 ② — 2025년 이후 시행

구분	조례명	시행일	조문 수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2025. 1. 1.	25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2025. 3. 19.	27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2025. 7. 11.	24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2025. 10. 2.	22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025. 12. 31.	2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026. 1. 5.	23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2026. 4. 8.	37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2026. 7. 10.	23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2026. 7. 10.	14

자료: 같은 자료. 시행일이 같은 2개소는 가나다순

조문 수의 편차가 여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 전북특별자치도가 14개로 가장 적고 부산광역시가 37개로 가장 많아 두 배 이상 차이가 남. 두 조례 모두 제명에 「기본」을 달고 있으나 담은 조문의 수는 크게 다름.

조문 수의 차이가 곧 규율의 밀도 차이는 아님. 전북특별자치도는 한 조문에 여러 항을 담는 방식이어서 제4조 하나에 대상 사무의 기준과 의회 동의, 그 예외까지 두었음. 조문의 수는 규율의 양이 아니라 편성의 방식에 가까움.

제명에 「기본」을 단 자치단체가 부산과 전북 2개소임. 기본 조례라는 표제는 일반 규율의 지위를 밝히는 뜻으로 쓰이며, 두 조례 모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는 취지의 적용 범위 조문을 두고 있음.

I. 대상과 방법 (계속)

03 집계 방법과 한계

읽기 전의 확인

세 가지 제약

이 보고서의 비교는 두 층으로 이루어짐. 하나는 각 조례의 **조문 제목 목록**을 대조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계약과 위탁기간에 관한 **개별 조문의 본문**을 조회한 것임. 두 층의 확실성이 다르므로 나누어 밝힘.

표 3. 집계의 제약

구분	내용
조문 제목 기준	「어떤 조문을 두었는가」는 조문 제목 으로 판별하였음. 다른 조문 안에 같은 내용이 들어 있어도 제목이 다르면 세지 아니하였으므로, 내용의 유무가 아니라 조문의 배치를 보는 것임
본문은 일부만 확인	본문을 조회한 것은 재계약·위탁기간 조문 에 한정됨. 표에 「확인되지 아니함」으로 적은 것은 규정의 부존재가 아니라 이 보고서의 확인 범위 밖임 을 의미함
15개소는 전수가 아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본청 조례를 확인하지 못하여 15개소 으로 집계하였음. 비율은 15를 모수로 한 값임

자료: 본 연구소가 집계의 범위를 정리

첫째의 제약을 조금 더 적어 둠. 예컨대 서울특별시는 재위탁의 금지를 독립 조문으로 두지 아니하였으나 「**수탁기관의 의무**」 조문 안에 「위탁받은 사무를 다시 위탁할 수 없다」는 항을 두고 있음. 조문 제목만으로 세면 서울은 재위탁 조문이 없는 것으로 잡히나 실제로는 규율하고 있음.

그러므로 조문 제목의 비교는 **규율의 유무**가 아니라 **규율을 얼마나 앞세워 두었는가**를 보는 것으로 읽어야 함. 별도의 조문으로 세운 사항은 실무에서 찾기 쉽고 개정의 대상이 되기도 쉬우므로, 그 자체가 자치단체가 무엇을 중요하게 다루는지를 보여 주는 지표가 됨.

둘째의 제약은 이 보고서가 다루는 범위를 정함. 위탁기간과 재계약을 고른 것은 그것이 **수치로 비교되는 몇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임. 선정 기준이나 감독의 방법은 조례마다 표현이 달라 같은 잣대로 세기 어려우므로, 이 보고서는 그 부분을 **조문의 유무**로만 다루었음.

조문 번호를 다루는 데에도 함정이 있었음. 여러 조례에서 **조문 제목의 목록 순서와 실제 조 번호가 어긋남** — 조문의 이동과 삭제가 누적된 결과임. 본문을 조회할 때 이 어긋남을 확인하며 번호를 맞추었고, 맞추지 못한 것은 「확인되지 아니함」으로 두었음.

II. 조례의 외형

04 이름의 여덟 가지

표제부터 다름

15개소 · 8종

같은 제도를 규율하는 조례인데 **이름이 여덟 가지**임. 상위 법령이 조례의 명칭을 정하지 아니하므로 자치단체마다 달리 붙인 결과임.

표 4. 조례명의 유형

구분	개소 수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7	대구·대전·세종·경기·강원·충북·제주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	인천·울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	서울
민간위탁 기본 조례	1	부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1	전북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1	충남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1	경남
사무위탁 조례	1	경북

자료: 15개 조례의 제명을 본 연구소가 분류

이름의 차이가 뜻의 차이로 이어지는 자리가 있음. **경상북도**는 「사무위탁 조례」라 하여 제명에 **「민간」이 들어가지 않**함. 다만 그 조례는 「민간위탁 사무내용」,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와 같은 조문을 두고 있어 **내용은 민간위탁을 규율**함. 제명만 보고 다른 제도를 다루는 조례로 오인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자리임.

「촉진」이라는 낱말도 눈에 띄. 경상남도도 「촉진 및 관리」라 하여 **민간위탁을 늘리는 것과 관리하는 것**을 함께 제명에 담았음. 전북특별자치도의 조례도 목적 조문에서 「민간위탁을 촉진함으로써 행정관여의 범위를 축소」한다고 밝히고 있어, 제명에는 없어도 같은 취지를 담고 있음.

실무에서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찾을 때 이 이름의 편차가 걸림돌이 됨. 「민간위탁 조례」로만 검색하면 경상북도의 조례는 나오지 아니하고, 자치단체 이름과 「위탁」을 함께 넣어야 찾아짐. 이 보고서의 수집에서도 자치단체마다 낱말을 바꾸어 가며 찾아야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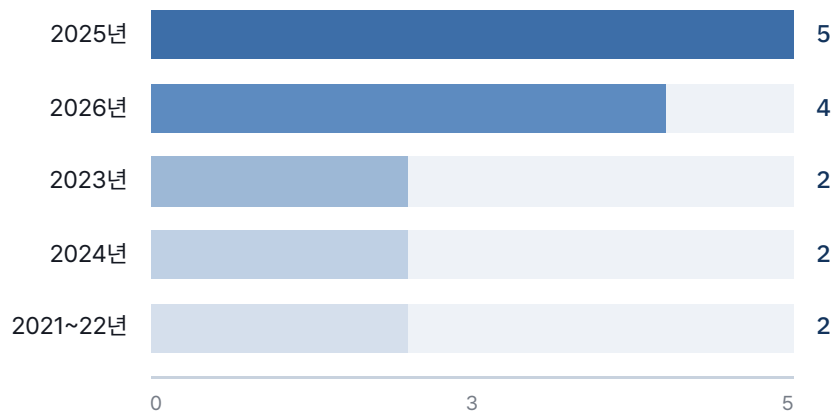
II. 조례의 외형 (계속)

05 시행 시기의 집중

최근 2년

9개소 · 60%

현행 조례의 시행일을 연도별로 세면 최근에 몰려 있음. **2025년 이후가 9개소으로 60%**이고, 2026년만 4개소임.



현행 조례의 시행 연도별 자치단체 수 (합계 15개소)

이 수치는 **현행 조례의 시행일**이지 처음 만들어진 시점이 아님. 여기에 잡힌 날짜는 **가장 최근의 개정이 시행된 날**이므로, 이 분포는 **‘최근에 조례를 개정하였다’**로 읽어야 함.

다만 그 집중의 원인을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음. 조례의 개정은 상위 법령의 개정, 감사 지적, 의회의 요구, 다른 자치단체의 선례 등 여러 사정에서 비롯되므로, 시기가 겹친다는 사실이 곧 같은 원인을 가리키지는 아니함.

시기와 관련하여 확인되는 사실은 하나 있음.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24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가사무 민간위탁을 법률로 올리려는 시도가 진행 중임 (KIEM-REPO-2024-03). 그 법률안은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치사무의 조례를 직접 바꾸지는 아니하나, 제도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기와 조례 개정이 몰린 시기가 겹치는 것은 사실임.

조례의 개정이 무엇을 바꾸는지도 보아야 함. **위탁기간의 상한과 재계약의 횟수**는 개정으로 달라지면 진행 중인 위탁의 갱신에까지 영향이 미치나, 위원회의 구성이나 사무편람 같은 절차 조항은 바뀌어도 기존 협약에 곧바로 닿지 아니함.

그러므로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할 때에는 **언제 시행된 조문인지**를 함께 보아야 함. 그 차이가 정책의 선택인지 개정이 늦은 결과인지는 조문만으로 가릴 수 없음.

조문 수의 편차도 큼. 가장 적은 **전북특별자치도가 14개**, 가장 많은 **대구광역시와 부산광역시가 각 37개**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남. 다음 장에서 그 차이가 어디에서 생기는지를 봄.

III. 공통의 구조

06 공통 조문

기본형

15개소 공통

이름과 분량이 달라도 조문의 기본 구조는 같음. 15개소가 모두 두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표 5. 15개소가 모두 둔 조문

구분	규율 사항
목적·정의	근거 조항(대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과 용어의 뜻
대상 사무의 기준	단순 사실행위,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 전문지식·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
의회 동의	민간위탁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보고를 함께 정한 예가 많음)
선정 기준·방법	인력·재정·시설·기술·공신력의 종합 검토, 공개모집 원칙
심사·심의위원회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계약·협약 체결	협약에 담을 사항(목적, 사무 내용, 기간, 예산, 의무와 책임 등)
지도·감독	보고 요구, 시정 요구, 처분의 취소·정지
성과평가	위탁사무의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
사무편람	수탁기관이 작성·비치할 처리 절차와 기준

자료: 15개 조례의 조문 제목을 본 연구소가 대조. 제목의 표현은 조례마다 다름

공통의 범위가 넓은 것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기준과 지휘·감독을 정하고 있어 여러 자치단체가 그 구조를 따랐기 때문임.

공통 조문 안에서도 세부는 갈림. 전북특별자치도는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3억원 이하인 단순 집행 사무와 청소·방호·청사관리**는 예산 의결로 의회 동의를 갈음하도록 정하였음. 동의 조문이 있다고 범위가 같지는 아니함.

심사위원회도 그러함. 위촉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노무 분야 위원을 1명 이상** 두도록 정한 자치단체가 여럿이며, 강원특별자치도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하도록 하였음.

조문의 순서에는 흐름이 있음 — **대상을 정하고, 동의를 받고, 상대를 고르고, 계약하고, 감독하고, 평가하는** 순서로, 위탁의 **개시에서 이행에 이르는 경로**가 그대로 나타나 있음.

IV. 갈리는 규율

07 조문의 유무가 갈리는 사항

뒤로 갈수록 갈림

조문 제목 기준

공통 구조 밖의 사항으로 가면 조문의 유무가 갈림. 몇 개소가 독립 조문으로 두었는지를 세면 다음과 같음.

표 6. 독립 조문으로 둔 자치단체의 수

구분	개소 수	자치단체
적정성 검토	12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제주
재계약(또는 위탁기간)	12	경기·울산·경남을 제외한 12개소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10	부산·대구·인천·울산·경기·강원·충북·경북·경남·제주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충북·경북·제주
회계감사	3	부산·대구·인천
재위탁 금지	3	울산·경기·전북
인계·인수	2	부산·대구
정산	1	경기
정보공개	1	부산
공개모집	1	세종

자료: 15개 조례의 조문 제목을 본 연구소가 대조. 다른 조문 안에 같은 내용을 담은 경우는 세지 아니하였음

표를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위탁의 개시에 가까운 사항일수록 여러 자치단체가 두고, 이행과 종료에 가까울수록 적어짐**. 적정성 검토·선정 이의신청은 10개소 이상이 두었으나, 정산·정보공개는 1개소뿐임.

이 기술품이 이 보고서의 핵심 관찰임. 위탁을 **맡기기까지**의 절차는 어느 조례나 촘촘하고, **맡긴 뒤**의 통제는 자치단체에 따라 있고 없음이 갈림. 다음 세 절에서 갈리는 사항을 하나씩 봄.

IV. 갈리는 규율 (계속)

08 재계약과 위탁기간

3년과 5년

본문을 조회한 범위

재계약은 갈림이 가장 큰 사항임. 본문을 조회한 범위에서 확인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7. 재계약과 위탁기간의 규율

구분	위탁기간 상한	재계약	심의 시한
대전광역시	5년 이내	5년 범위	—
전북특별자치도	5년 이내	5년 범위	90일 전
세종특별자치시	3년 이내	3년 범위 · 1회	—
경상북도	3년 이내	확인되지 아니함	90일 전
서울특별시	확인되지 아니함	3년 이내 · 1회	90일 전
부산광역시	확인되지 아니함	3년 이내	90일 전
인천광역시	확인되지 아니함	한 차례만	60일 전
제주특별자치도	확인되지 아니함	횟수 제한 없음	60일 전
대구·충북·충남	확인되지 아니함	횟수 제한 없음	90일 전
경기·울산·경남	확인되지 아니함	재계약 조문 없음	

자료: 각 조례의 재계약·위탁기간 조문을 본 연구소가 조회. 강원은 조문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여 제외
확인된 범위에서 **위탁기간의 상한은 3년과 5년으로 갈림**. 세종과 경북이 3년, 대전과 전북이 5년임. 상한이 두 배 차이 나므로 **수탁기관이 사업을 계획하는 기간이 달라짐**.

재계약 횟수도 갈림. 서울·세종·인천은 1회로 제한하나, 그러한 제한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심의를 거치면 반복하여 재계약할 수 있음. 앞서 위탁운영 사회복지관의 수탁법인 평균 위탁 횟수가 4.5회라고 정리한 바 있는데(KIEM-REPO-2022-01), 그러한 장기 위탁이 가능한 조례 구조가 확인됨.

심의의 시한은 만료 90일 전이 다수이고 인천과 제주가 60일 전임. 시한이 짧으면 재계약이 부적정할 때 새 수탁기관을 고를 시간이 줄어듦.

IV. 갈리는 규율 (계속)

09 재위탁의 규율

금지의 방식

울산·경기·전북 외

법제처는 수탁자의 재위탁과 위임받은 하부기관의 민간위탁이 모두 **별도의 법령상 근거를 요구**한다고 회신하여 왔음(16-0131, 17-0092 — KIEM-REPO-2026-02). 조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세 갈래로 나타남.

표 8. 재위탁을 다루는 방식

구분	자치단체	내용
독립 조문	울산·경기·전북	「재위탁의 금지」, 「수탁기관의 위탁 금지」를 조문으로 세움. 울산은 다시 위탁하기 위한 절차 까지 별도로 둬
의무 조문 안에	서울 등	「수탁기관의 의무」의 한 항으로 규정 — 원칙 금지, 일부는 승인을 받으면 가능
재계약 조문과 함께	충북·충남	「재계약·재위탁」을 한 조문에 둬. 충남은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 를 동의안에 적게 함

자료: 각 조례의 조문 제목과 확인한 본문을 본 연구소가 정리

여기서 용어에 주의가 필요함. **「재위탁」이라는 말이 두 가지 뜻으로 쓰임**. 하나는 수탁자가 받은 **사무를 다시 제3자에게 맡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위탁기간이 끝난 뒤 새 수탁자를 골라 다시 위탁하는 것**임. 전북특별자치도의 조례는 정의 조문에서 뒤의 뜻으로 「재위탁」을 정의하고, 앞의 것은 「수탁기관의 위탁 금지」라는 다른 조문으로 다룸.

같은 낱말이 조례마다 다른 뜻으로 쓰이므로 **정의 조문을 먼저 읽어야** 함. 「재위탁이 금지된다」를 보고 기간 만료 후의 새 위탁까지 막힌 것으로 오인하면 판단이 어긋남.

재계약의 판단을 **다른 절차로 같음**하는 규정도 있음. 부산광역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것으로 보고, 대전광역시는 공유재산이 포함된 위탁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은 각각 그 법령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였음. 대상에 **재산이나 특별법이 걸리면 기준이 갈라진**다는 것을 미리 밝혀 둔 것임.

충청남도의 방식은 눈에 띄는 설계임. 재위탁 — 여기서는 새 수탁자를 고르는 것 — 을 하려면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의회 동의안에 함께 적도록 하였음. 재계약과 새 위탁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가 의회의 판단 대상이 되게 한 것임.

IV. 갈리는 규율 (계속)

10 정산과 회계감사

규율이 가장 성긴 영역

정산 1개소 · 회계감사 3개소

현장 질의가 가장 많이 집중되는 영역이 조례에서는 규율이 가장 성김. 앞선 보고서에서 확인하였듯 실무 질의의 **51.1%가 예산의 집행과 정산**에 관한 것인데(KIEM-REPO-2026-03), 정산을 독립 조문으로 둔 광역은 **경기도**뿐임.

제21조(정산)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완료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경기도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고 그 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고 도지사가 지정한 **회계전문가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2025. 1. 1. 시행)

세 개의 항이 각각 다른 물음에 답함 — **정산보고서의 시한(3개월), 집행잔액과 이자(반환), 회계감사의 주체**(도지사가 지정한 회계전문가). 셋 모두 현장에서 반복되는 물음임.

회계감사를 독립 조문으로 둔 자치단체는 부산·대구·인천 3개소임. 서울특별시도 독립 조문이 아니라 「**수탁기관의 의무**」 안에 두었는데, 그 내용은 오히려 구체적임 — 매 사업연도 사업별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며, 감사인은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독립된 자로 지정하게 함.

여기서 **02절에서 밝힌 제약**이 그대로 드러남. 조문 제목만 세면 서울은 회계감사 조문이 없는 것으로 잡히나 실제 규율은 상세함. 그러므로 이 절의 수치는 **규율의 유무**가 아니라 **규율을 독립 조문으로 세웠는지**를 나타내는 것임.

이행 단계의 통제에서 **지도·점검**은 사정이 다름.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도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지웠고, 인천광역시는 점검에 담을 내용을 다섯 가지로 열거하였음 — 계약 이행, 성과평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시설·안전 관리임.

그러므로 이행 단계의 규율이 통째로 성긴 것은 아님. **감독**은 규율되어 있으나 **금전의 정산**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이 더 정확함. 감독은 행정기관이 하는 일이어서 조례로 정하기 쉬운 반면, 정산은 비용의 인정 범위가 사무마다 다르기 때문으로 보임.

그럼에도 정산의 경우는 사정이 다름. 정산은 조문의 위치가 아니라 **규율의 존재 자체**가 문제 되는 사항이며, 집행잔액과 이자의 처리, 정산보고서의 제출 시한과 같은 사항은 협약으로 정하지 아니하면 다툼이 생김. 앞서 정산의 기준이 **원가계산서의 비목 구분과 협약의 조항**에 있다고 한 것과 같음(KIEM-REPO-2024-01).

IV. 갈리는 규율 (계속)

11 1개소만 둔 조문

개별의 설계

여섯 사례

한 자치단체만 둔 조문이 여섯 있음. 다른 자치단체가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불필요한 것은 아니며, 각각 그 자치단체가 겪은 사정을 반영한 설계로 보임.

표 9. 1개소만 둔 조문

구분	조문	내용
경기도	정산	정산보고서 3개월, 집행잔액·이자 반환, 회계감사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위탁사무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관리시스템 운영	위탁사무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체계
충청남도	위탁금 신고 성과금	위탁금의 부적정 집행을 신고한 자에 대한 성과금
세종특별자치시	공개모집	선정 절차 중 공개모집을 독립 조문으로 분리
울산광역시	위탁사무를 다시 위탁하기 위한 절차	재위탁 금지의 예외를 절차로 규율

자료: 15개 조례의 조문 제목을 본 연구소가 대조

여섯 가운데 넷이 **위탁이 시작된 뒤의 통제**에 관한 것임 — 정산·정보공개·관리시스템·신고 성과금. 개시 절차는 어느 조례나 촘촘하나, 이행 단계의 통제는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덧붙여 온** 모습을 보여 줌.

충청남도의 **위탁금 신고 성과금**은 특히 이례적임. 위탁금의 부적정한 집행을 알린 사람에게 성과금을 주는 장치로, 감독의 방법을 행정기관의 점검이 아니라 **내부의 신고**에서 찾은 설계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신고자 보상을 정하고 있는 구조와 통함.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리시스템**은 성격이 다름. 실체적 규율이 아니라 **관리의 수단**을 조례에 명시한 것이며, 위탁 사무의 수와 규모가 커지면 개별 부서의 관리로는 전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V. 해석

12 질의와 조례의 어긋남

두 자료의 대조

FAQ 307건 · 조례 15개소

이 보고서의 집계를 앞선 보고서의 집계와 나란히 놓으면 어긋남이 드러남.

표 10. 질의의 분포와 조례의 조문

구분	현장 질의	조례의 독립 조문
집행·정산	157건 (51.1%)	정산 1개소 / 회계감사 3개소
수탁기관 선정	25건 (8.1%)	선정기준·심사위원회 15개소 / 이의신청 10개소
협약·재계약	21건 (6.8%)	재계약 12개소
의회 동의	9건 (2.9%)	의회 동의 15개소 / 동의안 4개소

자료: 현장 질의는 KIEM-REPO-2026-03, 조례는 이 보고서의 집계

어긋남이 뚜렷함. **질의가 가장 많은 집행·정산에 조례의 조문이 가장 적고**, 질의가 적은 의회 동의와 선정에는 모든 조례가 조문을 두고 있음.

이 어긋남을 두 가지로 읽을 수 있음. 하나는 **조례가 성기니 질의가 많다**는 읽기이고, 다른 하나는 **질의가 많은 사항은 원래 조례로 정하기 어렵다**는 읽기임. 두 읽기 모두 자료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 어느 쪽이라고 단정하지 않음.

다만 뒤의 읽기에도 한계가 있음. 경기도의 정산 조문이 보여 주듯 **정산보고서의 제출 시한, 집행잔액과 이자의 처리, 회계감사의 주체**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임. 사무마다 달라지는 것은 **어떤 비용을 인정할 것인가**이고, 절차와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반 규정으로 정할 여지가 있음.

표의 아래 두 줄도 같은 방향을 가리킴. 의회 동의는 질의가 9건(2.9%)으로 적는데 **15개소 모두가** 조문을 두었고, 수탁기관 선정도 질의가 25건(8.1%)인데 선정 기준과 심사위원회를 **15개소 모두가** 두었음. 규율이 갖추어진 사항에서는 질의가 적다는 관계가 나타남.

다만 이를 인과로 읽을 수는 없음. 의회 동의와 선정은 **연간 몇 차례의 절차**이고 집행과 정산은 **매일의 일**이므로, 질의의 수에는 규율의 밀도 말고도 **일어나는 빈도**가 함께 작용함.

따라서 조례에 정산 조문이 없다는 사실은 정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정하지 아니한 것**에 가깝다고 보는 편이 자료에 부합함. 위탁의 개시 절차가 오래 다듬어져 온 데 비하여 **이행과 종료의 절차**는 뒤늦게 다루어지고 있는 단계로 읽힘.

V. 해석 (계속)

13 실무의 확인 순서

여섯 항목

비교에서 도출

이 비교가 실무에 주는 확인 항목을 순서로 놓으면 다음과 같음.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하거나 자기 조례를 점검할 때의 순서임.

표 11. 조례를 읽을 때의 확인 순서

구분	확인 사항	이 보고서의 근거
1	정의 조문	「재위탁」이 수탁자의 재이전인지 기간 만료 후의 새 위탁인지 조례마다 다름
2	위탁기간의 상한	확인된 범위에서 3년과 5년으로 갈림. 사업 계획의 길이가 달라짐
3	재계약의 횟수	1회 제한이 있는 자치단체와 없는 자치단체가 있음. 장기 위탁의 가부가 갈림
4	재계약 심의 시한	만료 90일 전이 다수, 60일 전이 둘. 후속 절차의 시간이 달라짐
5	정산의 근거	독립 조문을 둔 자치단체가 1개소뿐이므로 대개 협약이 정함
6	조문의 번호	목차의 순서와 실제 조 번호가 어긋난 조례가 많음. 인용 시 원문 확인

자료: 이 보고서의 비교를 근거로 본 연구소가 정리

여섯 가운데 1과 5가 실무의 오해를 가장 자주 낚는 자리임. 앞의 것은 같은 낱말이 다른 뜻으로 쓰이기 때문이고, 뒤의 것은 조례에 없으니 근거가 없다고 여기기 쉬우나 실제로는 협약이 정하고 있기 때문임.

여섯 항목은 모두 조례를 읽는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임. 협약을 쓰거나 위탁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 여섯을 확인해 두면, 뒤에 생길 물음의 상당 부분이 앞당겨 처리됨. 특히 2와 3은 사업의 기간과 수탁기관의 지위를 정하는 사항이므로 계획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를 옮겨 오는 일에도 순서가 있음. 조문을 그대로 가져오기 전에 그 조례의 정의 조문과 위탁기간 규정을 함께 읽어야 하며, 상위 규범이 정한 범위를 넘는 조항은 옮겨 와도 효력을 가지지 못함. 법제처가 조례로도 재위탁의 근거를 만들 수 없다고 회신한 것이 그 경계를 보여 주는 사례임(KIEM-REPO-2026-02).

V. 해석 (계속)

14 학술 문헌의 논의

조례 정비의 논의

KCI 등재 문헌 4편

조례가 민간위탁의 실질적인 규율 층을 이룬다는 점은 학계에서도 다루어져 왔음.

최윤영(2014)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민간위탁의 법령상 근거를 검토하면서, 개별 사무의 위탁을 위한 **개별 조례와 일반 조례**가 함께 쓰이고 일부 조례가 신규 위탁에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음을 정리하였음. 이 보고서에서 15개소 모두가 의회 동의 조문을 두고 있음이 확인된 것과 이어짐.

김동욱(2016)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민간위탁 예산 운영을 분석하면서 개선 방향으로 **조례 정비**를 들고, 의회 동의와 보고·운영평가위원회의 설치·성과평가·**수탁기관 선정과 재계약의 기준 마련**을 제시하였음. 이 보고서가 확인한 15개소의 조례는 그 가운데 앞의 셋은 대체로 갖추었고, **재계약의 기준은 여전히 같**린다는 점을 보여 줌.

이경환·장교식(2023)은 경기도를 사례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법제의 쟁점을 검토하면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의 능률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는 전제 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율을 다루었음. 이 보고서에서 경기도가 **정산 조문을 둔 유일한 광역**으로 나타난 사정과 함께 볼 논의임.

홍정선(2013)은 민간위탁의 개념이 보조금 교부·위임·용역·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등 유사 제도와 구별되어야 함을 논하였음. 이 보고서에서 조례명이 여덟 가지로 나뉘고 「재위탁」이 두 가지 뜻으로 쓰이는 것이 확인된바, **개념의 정리가 조례의 층에서도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읽을 수 있음.

네 편을 함께 보면 논의가 **조례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에 모여 있음이 확인됨. 무엇을 조례에 담아야 하는지(김동욱), 조례가 어떤 근거 위에 서 있는지(최윤영), 조례와 상위 법령의 관계가 어떠한지(이경환·장교식), 조례가 쓰는 개념이 무엇인지(홍정선)가 각각의 물음임.

이 보고서는 그 물음들에 **현재의 상태를 대조한 자료**를 더한 것에 해당함.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에 관한 규범적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고, **지금 무엇이 담겨 있고 무엇이 갈리는지**를 정리하는 데 그쳤음.

확인 범위의 한계도 적어 둠. 인용한 네 편은 모두 **2023년 이전**의 문헌이며 2024년 이후의 논의는 검색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음. 이 보고서가 다룬 조례의 60%가 2025년 이후 시행분이므로, 최근의 개정을 다룬 문헌이 있다면 이 대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덧붙일 것이 있음. 문헌이 검토한 시점과 이 보고서의 자료 사이에는 **10년 안팎의 간격**이 있음. 김동욱(2016)이 개선을 제안한 사항 가운데 의회 동의와 성과평가는 이 보고서의 15개소가 모두 갖추었으므로, 그 사이에 **제도가 진전된 부분**도 함께 읽어야 함.

근거와 한계

인용한 자치법규

표 12. 이 보고서가 인용한 조례

자치단체	조례명	자치법규 일련번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100007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2120405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1630693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104465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2076883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767257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1802111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1958347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1926983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2056047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2148699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2148725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1672801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192588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2024649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치법규. 일련번호로 원문을 조회할 수 있음

이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자치구 5개소**(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이 2026년 6~7월에 각각 민간위탁 조례를 제정한 사실을 검색으로 확인하였으나, 이 보고서는 광역 본청을 대상으로 하므로 비교에는 넣지 아니하였음.

근거와 한계 (계속)

참고 문헌

표 13. 참고한 학술 문헌

저자	제목	출처
홍정선	지방자치법상 민간위탁의 개념 — 행정실무상 유사개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13(4), 2013, 85-107
최윤영	지방자치단체 사무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연구 14(4), 2014, 377-407
김동욱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및 공기관 대행사업예산 운영현황 분석과 조례정비 방안	정부회계연구 14(1), 2016, 31-53
이경환·장교식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법제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 경기도를 중심으로	일감법학 56, 2023, 321-350

서지는 KCI 등재 정보로 대조하였음

문헌 검토의 범위

학술 문헌은 KCI 등재 정보에서 **「민간위탁」의 조례·법제·운영 실태**를 축으로 찾아 검토하였고, 이 보고서의 관찰에 각각 닿는 **네 편**을 인용하였음.

다만 **광역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전국 단위로 대조한 등재 문헌은 확인하지 못하였음**. 개별 자치단체를 사례로 삼은 연구(김동욱 2016의 제주, 이경환·장교식 2023의 경기)는 있으나 전국 비교는 확인 범위에 없었음. 따라서 이 보고서의 집계와 **직접 대조할 수 있는 수치는 없음**.

연구기관의 보고서 가운데 광역 민간위탁 조례를 비교한 자료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등재 정보로 서지를 대조할 수 있는 문헌에 한정**한다는 이 보고서의 기준에 따라 인용하지 아니하였음. 그 자료의 집계와 이 보고서의 집계를 대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두 결과가 일치하는지는 **확인된 바 없음**.

문헌의 검색은 KCI 등재 정보의 표제와 초록을 기준으로 하였고, **학위논문은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였음**. 조례 비교를 다룬 학위논문이 있을 수 있으나 서지를 같은 기준으로 대조하기 어려워 제외하였음.

인용한 네 편의 논지는 각 문헌이 밝힌 범위로만 옮겼고, 이 보고서의 집계로 **그 결론을 지지하거나 반박하지 아니하였음**. 문헌이 검토한 시점과 이 자료의 시점이 다르기 때문임.

근거와 한계 (계속)

이 보고서의 한계

유의 사항

2026년 8월까지 국가법령정보에 공개된 자치법규 기준임. 조례는 개정이 잦으므로 실무 적용 시점의 **현행 조문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이 보고서는 각 조례의 **조문 제목 목록과 재계약·위탁기간 조문**만을 확인하였으므로, 표의 **「확인되지 아니함」**은 **규정의 부존재가 아니라 이 보고서의 확인 범위 밖**임을 의미함. 조문 제목으로 세었으므로 **다른 조문 안에 같은 내용을 담은 경우는 잡히지 아니함** — 서울특별시의 회계감사와 재위탁 규율이 그 예임. 대상은 광역 본청의 일반 조례 15개소이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본청 조례를 확인하지 못하여 제외**하였으므로 전수가 아님.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는 다루지 아니하였고, 개별 사무에 관한 조례와 교육감 소관 조례도 대상이 아님. 조례의 조문 유무는 **규율의 밀도를 보여 줄 뿐 운영의 실재를 보여 주지 아니함** — 조문이 있어도 운영되지 아니할 수 있고 조문이 없어도 협약과 지침으로 규율될 수 있음.

함께 볼 자료

현장 질의의 분포는 **현장 질의 307건의 쟁점 분석**(KIEM-REPO-2026-03), 위탁의 가부와 근거는 **법령해석례로 본 위탁의 한계**(KIEM-REPO-2026-02), 재위탁과 재계약의 제도 구조는 **재위탁과 재계약의 규율**(KIEM-REPO-2022-01)에서 각각 다루었음.

문의

내용의 문의는 **한국관리위탁연구소**로 하시기 바람.